

202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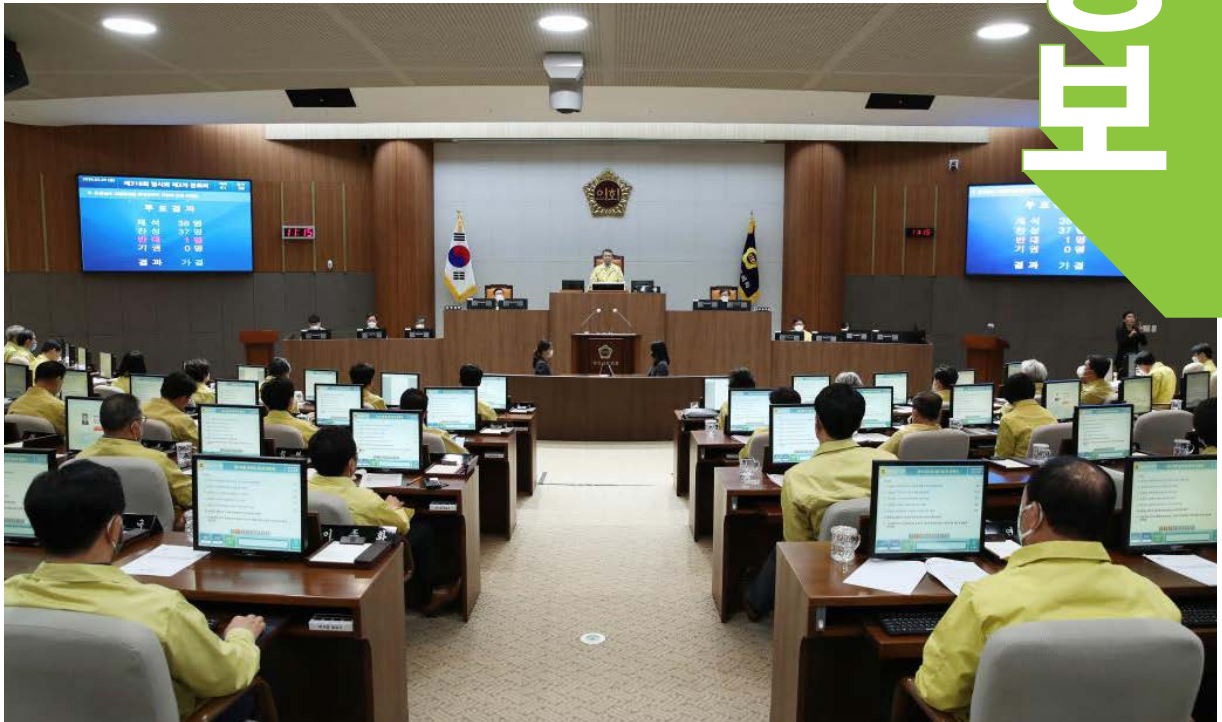
03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의정정보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최근 제·개정 법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2020-3 호

03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07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 10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 21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25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 27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33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 공원 조례
- 35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 36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지원에 관한 조례
- 38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41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마스크 대란 막기 위한
『개성공단 기동 축구 성명서』발표



- 42 대구시의회, 특정인들의 대구시민에 상처 주는 발언 자제 촉구 성명
- 43 인천시의회, 면마스크 착용 시민참여 캠페인 펼쳐
- 44 광주시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의안 채택
- 46 충북도의회, 의정활동을 SNS로 도민에게 공개
- 47 경남도의회,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조기편성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최근 제 · 개정 법령

- 51 검역법
- 53 의료법
- 5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6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질의
- 6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3호

01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1.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시행 2020. 3. 10.] [대구광역시조례 제5406호, 2020. 3. 10.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妊期) 여성을 말한다.
3.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성을 말한다.
4.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6.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부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難妊)”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부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모성·부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성 및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신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모자·부자보건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3. 모자·부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6조(모자·부자보건사업) ① 시장은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부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3. 임신부·예비 아빠·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4. 모자·부자보건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
5. 그 밖에 모성·부성,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지원
2. 난임부부 심리상담 및 의료상담
3. 난임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교육
4.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시장은 임신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모자·부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3. 1.] [광주광역시조례 제5387호, 2020. 3. 1. 전부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과 훈련
 11.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12.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시민이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책무와 권리) ①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관리지원단)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과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감염병 예방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2.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단의 운영 및 제8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감염병 표본감시)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를 따른다.

제12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따른다.
- ③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 ⑤ 시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 요청을 받은 경우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역학조사 계획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방접종 실시주간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다양한 예방접종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예방접종주간에 영유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제1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

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7조(감염병관리시설 평가) ①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감독·지원의 내용 등은 규칙 제31조의2에 따른다.

제18조(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① 시장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법 제39조의3에 따라 감염병환자들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감염병환자들의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촉자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20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⑥ 시장은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5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9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23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일시적 폐쇄
 -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24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방역관)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방역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체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을 가진다.

제26조(역학조사관) ① 시장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다만,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역학조사관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23조제1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역학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한시적 종사명령) ① 시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게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검역위원) ①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검역위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5. 검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

제29조(손실보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30조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제18조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3. 이 조례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4.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5. 제23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법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6.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시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30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46조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조례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제30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제29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다.

제31조(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31조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통 차단 등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인해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한다.

제33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격리, 입원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
2.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미등원시 보육 돌봄 지원
3. 학교 휴교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5.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
6.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
8. 자가격리자가 시설격리를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제34조(의료인력 경비지원) 시장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감염병의 치료를 위해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 등(이하 “의료인력”이라 한다)을 동원한 경우 또는 해당 의료인 또는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수당·치료비 또는 조제료 등 소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35조(시설지원) 시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36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광주광역시·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 2020. 3. 16.] [경기도조례 제6492호, 2020. 3. 16.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도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경기도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 나.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또는 의회사무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다. 청원경찰
 - 라. 청원산림보호직원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다.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라.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가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4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도지사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경기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도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도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③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 접수의 처리) 도지사는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실시) 도지사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① 도지사는 갑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도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 인사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도지사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고자 보호)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도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도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도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을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① 도지사는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 2020. 3. 6.] [강원도조례 제4524호, 2020. 3. 6.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그 밖에 도지사가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해당 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도지사(해당 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도지사(해당 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3. 16.] [전라남도조례 제5015호, 2020. 3. 16.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산업 현장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전라남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자”는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라남도 명장”이란 숙련기술자로서 도 내 산업 현장에 오랫동안 종사하며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명장을 육성하고 전라남도 명장이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전라남도 명장은 자신이 가진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라남도 명장의 선정) ① 도지사는 도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 명장의 선정은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③ 전라남도 명장 선정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전라남도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도지사는 각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별도의 선정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전라남도 명장의 자격요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전라남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도에

-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도 소재 사업장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인정되는 숙련기술자
 3. 이 조례에 따른 동일 분야의 전라남도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숙련기술자
 4. 「전라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지정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숙련기술자

제6조(전라남도 명장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전라남도 명장을 추천할 수 있다.

1. 시장·군수
2. 도 소재 기업체의 장
3. 도 소재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기관의 장

제7조(전라남도 명장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장증서와 현판 등을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장려금의 지원 절차·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숙련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전라남도 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명장으로 선정된 숙련기술자가 창업을 할 경우 또는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각종 교육·훈련 시 전라남도 명장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 내 숙련기술자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전라남도 명장을 배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우대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전라남도 명장이 개발·생산한 제품 및 품질에 대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라남도 명장 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라남도 명장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전라남도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은 경우
3. 다른 전라남도 명장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경우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명장이 특별한 사정없이 도 내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기술장려금 등 지원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취소 및 자격 정지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전라남도 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전라남도 명장 증서와 현판 등을 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소의 경우 도지사는 지원을 중단하고, 당사자는 이미 지급받은 기술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전라남도 명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취소
2. 전라남도 명장 활성화 시책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전라남도 명장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 명장 업무담당 실장·국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3.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명장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임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라남도 명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3호

02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 공원 조례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지원에 관한 조례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1.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례

[시행 2020. 3. 11.] [과천시조례 제1670호, 2020. 3. 11.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성 및 운영에 이용객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
2. “어린이놀이터”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
3. “어린이놀이기구”이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4.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에 이용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
5. “어린이공원자문단”이란 어린이공원 등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문단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성의 기본방향) 시장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주민 및 어린이가 전문가와 함께 조성
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 공간으로 조성
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 ① 시장은 안전하고 유익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원활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공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조성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설계 디자인
3. 주민참여 교육계획
4. 유지·관리 방안과 이용객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5.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
2.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안전분야 전문가
4. 아동교육,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
5. 조경분야 전문가
6.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수당과 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업무 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 공원농림과
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 담당업무 부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 및 절차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시행 2020. 3. 6.] [의왕시조례 제1738호, 2020. 3. 6. 전부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의왕시 시세를 말한다.
2.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3.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4. “성실납세자”란 제3조제1항 대상자 중에서 제4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 ①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람으로서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선정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개인균등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 전부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② 성실납세자 선정일자, 선정인원 및 지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선정 방법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를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 총수의 1% 이내에서 전산 추첨하여 선정한다. 다만, 선정된 사람은 차후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전산추첨은 시장과 시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 지방세 관련위원회 위원 등 시장이 추천한 사람이 추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의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선정일로부터 5년간 계속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수여 및 지급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인증서
2.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경품(지역화폐 등) 지급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3. 2.] [인천광역시 동구 조례 제1228호, 2020. 3. 2.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품위유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목욕 및 이·미용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 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①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일괄조사 후 매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품위유지비를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지원대상에게 지급한다.

③ 동장은 품위유지비 교부 및 수불상황을 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중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사람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3. 목욕 및 이·미용비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
5.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

제6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품위유지비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동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품위유지비는 연 12만원(월 1만원)을 반기별로 나누어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축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되, 지급일은 다음 반기 지급기준일로 한다.

④ 품위유지비의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7조(품위유지비 전용상품권의 제작) 구청장은 “목욕 및 이·미용 전용권”을 표기하여 동구사랑상품권을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 ① 품위유지비는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수령한다.

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품위유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시행 2020. 3. 6.] [영주시 조례 제1251호, 2020. 3. 6.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교육) ①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3호

03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마스크 대란 막기 위한

『개성공단 가동 촉구 성명서』발표

대구시의회, 특정인들의 대구시민에 상처 주는 발언 자제 촉구 성명

인천시의회, 면마스크 착용 시민참여 캠페인 펼쳐

광주시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의안 채택

충북도의회, 의정활동을 SNS로 도민에게 공개

경남도의회,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조기편성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마스크 대란 막기 위한 『개성공단 가동 촉구 성명서』 발표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품귀 대란에 따라 11일 「개성공단 가동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최소한의 예방조치인 마스크도 부족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국내 1일 마스크 생산량 1천만 장은 1일 수요량인 3천만 장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따르면 개성공단에는 월 100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 할 수 있는 업체 1개사와 면 마스크 제조업체 50개사 그리고 위생방호복 제조업체 64개사가 있다. 특히, 약 3만 5천여 명의 북측 노동자가 있어 대량생산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요까지 감당할 수 있다.

이에 남북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개성공단 제봉업체의 즉각적인 가동을 검토하여 국민의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남북특위 신상해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다시 가동하여야 코로나19도 극복하고 남북관계도 복원할 수 있다”며 “시의회는 개성공단 가동 촉구와 함께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 부산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계획 이다”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회

특정인들의 대구시민에 상처 주는 발언 자제 촉구 성명

-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지역혐오 발언과 가짜뉴스 양산 행위 말아 달라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대구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지역혐오 발언과 가짜뉴스 양산 행위에 대해 응당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구시의회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250만 대구시민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의 한가운데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참아내고 있는 대구시민들에게 전 국민으로부터의 격려와 온정의 손길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밝히며, “몇몇 특정인이 마치 대구가 코로나19의 진원지인 것처럼 ‘대구사태’니 ‘대구신천지’니 하며 대구시민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대구시민은 사랑하는 가족과 격리되어, 심지어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생업조차 포기한 채,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면서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족과의 마지막 이별조차도 포기해야 하는 대구시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준다면 이런 지역혐오 발언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국민적 지탄을 받는 언행을 한 자는 대구시민에게 사죄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지역혐오 발언과 가짜뉴스 양산으로 국민을 갈라놓는 일체의 행위에 응당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면마스크 착용 시민참여 캠페인 펼쳐

인천광역시의회(이용범 의장)는 3월 1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단기간에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면마스크 착용 시민참여 캠페인’을 전개했다.

정부의 개정된 마스크 사용지침은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그리고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감염위험성이 낮은 곳에서는 면마스크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하고, 일상생활 에서는 시의원 및 공직자 모두가 앞장서서 면마스크 착용을 솔선수범” 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시민분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보건용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인과 건강 취약계층 등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람은 면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다.”며, “양보와 배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의안 채택

-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신천지 시설 폐쇄,
마스크 공급체계 개선 등 정부와 광주광역시에 강력히 촉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오늘 제286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극복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광주광역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감염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7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50여 명에 달한다. 온 국민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경제 활동 자체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발원지는 신천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천지는 폐쇄적인 운영과 신도 명단의 누락 제출 등 정부 방침에 비협조적인 처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마스크는 국민 필수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터무니없는 가격과 품귀 현상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나 사회 취약계층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우리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광주광역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건의안 주요 내용에는 ▲ 공공기관 건물의 임차료 감면 ▲ 소상공인들에 대한 각종 세금 및 금융 완화정책 마련 ▲ 신천지 관련 위장시설 추가 조사 및 폐쇄 조치 ▲ 마스크 공급체계 개선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회기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더불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충청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의정활동을 SNS로 도민에게 공개

- 이달 본회의부터, 도민 알권리 충족, 풀뿌리 지방자치 역량강화 기여 -

충북도의회가 이달부터 의정활동을 SNS로 도민에게 공개한다.

도의회는 이달 12일 개최하는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모든 의사 진행과정을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 5분 자유발언 등 모든 의사일정을 SNS로 생중계하면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도의회는 앞서 각 회기별 정례회와 임시회, 상임위원회 운영상황 등을 간추려 동영상 뉴스 ‘충북의정스케치’를 만들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장선배 의장은 “의정활동이 SNS 등으로 생중계됨에 따라 풀뿌리 지방자치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통채널을 다양화해 도민들께 공감 받는 의회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2011년 본회의 인터넷생방송을 시작해 2016년에는 각 상임 위원회로 확대했다. 지난 1월에는 미디어팀을 신설, 융복합미디어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조기편성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 도청 소관 4,800억원, 도교육청 소관 250억 규모 추경안 심사 처리 계획 -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세출수요를 반영하고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원포인트로 심의할 계획이다.

도청소관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은 선별진료소 장비 등 방역물품 지원에 68억원, 휴교 등에 따른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에 721억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에 64억원 등 4,800억원 규모이며,

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돌봄교실 중식비 10억원,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에 190억원 등 25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경예산은 30일부터 이틀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4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지수 의장은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남도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고, 이번 추경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3호

04



최근 제 · 개정 법령

검역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검역법

[시행 2020. 3. 4.] [법률 제17068호, 2020. 3.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검역환경이 항만에서 공항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세균성 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검역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역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역감염병에 에볼라바이러스병을 추가함(제2조제1호아목 신설).

나.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이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검역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등의 시책에 협력할 국민의 의무를 명시함(제3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라. ‘오염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관리지역 등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5조).

마. 검역업무 수행 시 정보화기기 등의 활용 근거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안전사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검역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12조제4항 및 제29조의2제2항 신설).

바. 운송수단별 특성에 맞게 검역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역 조사에 관한 사항을 항공기, 선박, 육로로 구분하여 정함(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과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을 추가함(제24조).

아.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때 시각적인 매체의 형태를 포함하도록 함(제29조의6).

자. 검역감염병 전파 방지 등을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 검역소를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7 신설).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제30조제2항 신설).

2. 의료법

[시행 2020. 3. 4.] [법을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자율보고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료기록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 또는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기관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제4조제6항).

나. 누구든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조의3제2항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다. 의료인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에 「군사법원법」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와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제21조제3항제6호의2 및 제17호 신설).

라. 의료인 등이 환자 등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경우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5항 신설).

마.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 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6조제13호 신설).
- 사.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 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등을 정함(제40조의2 신설).
-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제4항 신설).
- 차.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등이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자율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제47조제8항, 제9항 및 제12항 신설).
-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제58조제1항).
- 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제58조의4제3항 신설).
-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9 신설, 제58조의10제1항).
- 하.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설립 근거 등을 정함(제58조의11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4.]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 취업계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산정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성장·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안 제7조제6항)

신성장·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를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으로 명확화하고, 해당 위탁기관의 대상에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등을 추가함.

나.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 취업계약 범위 규정(안 제7조제16항 신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체결하는 사전 취업계약의 범위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취업교육 훈련계약 등으로 정함.

다. 지역특구 세액감면 한도 계산 시 투자누계액 기준 명확화(안 제8조의3)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계산 시 투자누계액이 되는 사업용 자산 중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은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라. 소재·부품·장비의 범의(안 제8조의8 신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범위를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정함.

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 제10조 신설)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요건 중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예시를 수학, 분자생명, 기계, 전기전자, 기초의학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력이 인정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정함.

바.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13조의5 및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5까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저장시설,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을 추가함.

사. 중소기업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안 제14조의2제3항)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 증가율을 1천분의 36에서 1천분의 38로 상향 조정함.

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확대(안 제25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입주지역으로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등을 추가함.

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적격 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마련(안 제36조 신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여부에 대한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정함.

차.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유가증권 제외 규정 합리화(안 제45조의3 제1항 단서 삭제)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소액 유가증권도 재산가액에 포함함.

카.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시 차감항목 추가(안 제45조의9제2항제4호 신설)

지방공사 및 보증보험회사의 채무상환 지원을 위하여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등을 추가함.

타.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대상 및 감면율 규정(안 제50조의4)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대상을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추천을 받은 물품으로 정하고,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함.

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지능형 물류 관리시스템 등 물류 자동화 설비를 추가하고,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의 적용범위를 공장원격관리 통합 관제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확대함.

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8의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스마트엘이디(LED) 조명 시스템을 추가함.

거.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안 별표8의8)

신성장 산업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시설을 종전의 102개 시설에서 첨단 메모리 반도체 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등 141개 시설로 확대함.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3호

05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질의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관할구역에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남동구새마을운동조직, 남동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남동구한국자유총연맹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직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해당 조직의 회원들에게 격려행사 및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견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의견 20-0018, 2020. 2.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관할구역에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남동구새마을운동조직, 남동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남동구한국자유총연맹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직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해당 조직의 회원들에게 격려행사 및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견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남동구 국민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하 ‘남동구 조례안’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는 국민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남동구새마을회와 동분회(가목),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남동구협의회와 동위원회(나목),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남동구 지회와 동분회(다목)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의 육성과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의 육성 및 격려를 위하여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제1호), 국민운동 조직 회원들에 대한 격려행사 및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견학 경비 지원(제2호), 그 밖에 회원의 공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3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남동구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남동구새마을회와 그 하부조직인 동분회(이하 ‘남동구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남동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인 동위원회(이하 ‘남동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남동구지회와 그 하부조직인 동분회(이하 ‘남동구한국자유총연맹’이라 함)의 회원들에게 격려행사 및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견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남동구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제2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제4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

기 위하여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남동구새마을운동조직, 남동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남동구한국자유총연맹(이하 ‘남동구국민운동조직’이라 함)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남동구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동구가 남동구국민운동조직의 소속 회원들에게 격려행사 및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견학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은 해당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남동구의 재정에서 소요비용을 지출하여 그 소속 회원들에게 견학 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비 지원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남동구국민운동조직의 회원들에게 격려행사 및 견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 외에 그 조직의 “회원 개인”에게 견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8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새마을의 날(매년 4월 22일)에 적합한 행사 등의 추진에 대한 노력할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남동구가 남동구국민운동조직의 회원들에게 격려행사 및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견학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

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동구국민운동조직의 소속 회원들에게 격려행사 및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견학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민간으로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재정법」이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나 공금 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에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의 운영이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남동구조례안 제3조에서는 남동구국민

운동조직에 대하여 남동구가 그 조직의 운영 및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나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동구국민운동조직의 회원들은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남동구국민운동조직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인 점을 고려할 때, 남동구가 직접 그 회원들에게 견학 등의 경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남동구국민운동조직을 운영할 수 없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동구가 남동구국민운동조직에 그 조직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남동구국민운동조직의 회원들에게 격려행사 및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견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남동구조례안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사업계획의 내용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의견 20-0025, 2020. 2. 17., 대구광역시 서구]

【질의요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사업계획의 내용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유】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참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사목에서는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 감사와 재산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제41조의2, 제127조, 제134조 등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의 결산에 관한 승인을 하며,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나 행정사무 감사 등의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추67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법리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이하 “대구시서구조례안”이라 함)을 살펴보면, 같은 조례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이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계획 등 같은 조례안 제2조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사업명,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역, 사업기간, 예산액 등(이하 “사업계획의 내용”이라 함)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함)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례안에서는 위와 같이 구청장이 의장에게 일부 사업계획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별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구청장이 사업계획

의 내용을 의회에 통보한 후 통보한 사항과 관련하여 반드시 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등의 법적 구속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수립한 사업계획의 내용을 단순히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부여된 앞서 살펴본 각 권한을 통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통상적인 견제를 할 수 있는 범위로부터 벗어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법제처 2019. 2. 14. 의견제시 19-0060, 법제처 2019. 8. 20. 의견제시 19-0266, 법제처 2016. 2. 2. 의견제시 16-0328 등 취지 참조), 이와 달리 구청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단순한 통보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구청장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된 권한이 박탈된다거나, 그러한 권한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구청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구시서구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의장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의미가 의장이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통보를 받는다는 것인지 의장 개인이 통보를 받는다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문언상 의장 개인이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한 권한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한다고 함은 조직적·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일 뿐 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기관의 권한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조례로 이를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구시서구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등으로 바꾸어 법리상·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자치법규 입안에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설명

충남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50개 안건 심의 -처리 시급한 조례안 40건, 동의안 8건, 위원선임 2건 등 의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50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의사일정을 단축한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처리가 시급한 조례안 40건과 동의안 8건, 위원선임 2건 등을 의결했다.

의원들은 조례안 심의 전 5분 발언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재표 부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생산·소비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만큼 이번 임시회는 지역경제와 도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일정을 대폭 줄이고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을 위주로 면밀히 심의했다”며 “혁신도시를 우리 품으로 안아온 220만 충남도민의 추진력과 열정으로 감염병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20년 3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